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52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김선민 · 신장식 · 김준형
서왕진 · 김재원 · 황운하
전진숙 · 김남희 · 한창민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담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

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을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u>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 -----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u>

<u>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u>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u>전부 또는 일부</u>를 부담한다. ④ (생략)	<u>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전부</u>-----. ④ (현행과 같음)
--	---